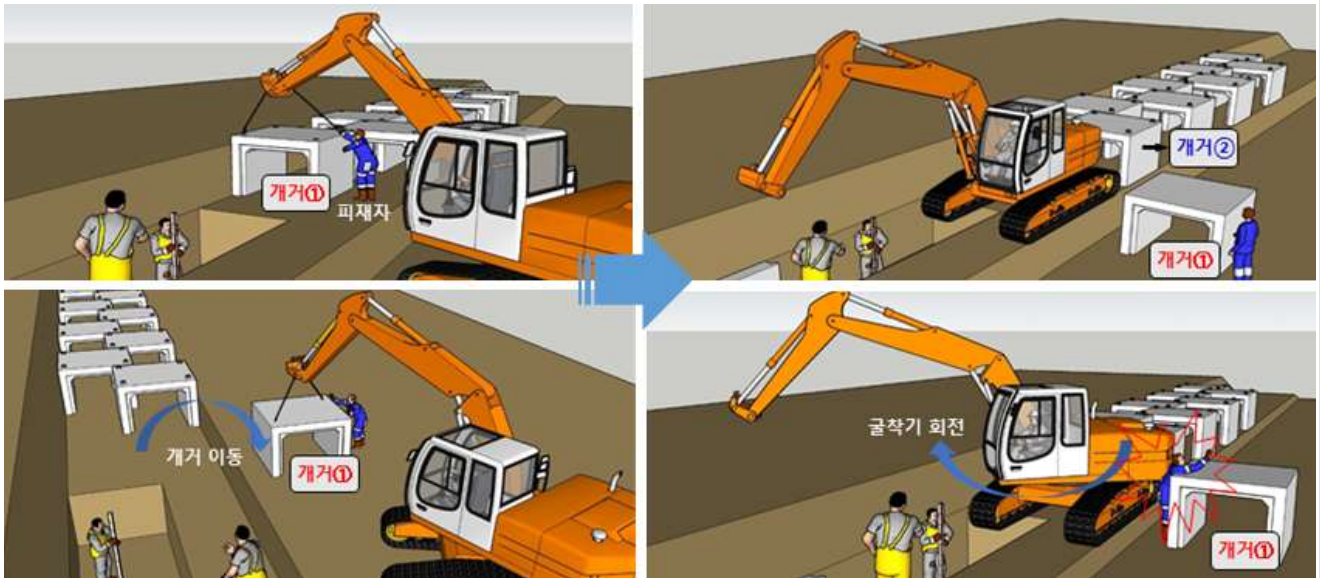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5. 19.(금) 08:15경, 경북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재해자가 굴착기 후면에 거치된 개거를 인양하기 위해 체인슬링을 체결하려고 개거*쪽으로 이동하던 중 회전하던 굴착기 후면과 임시 거치된 개거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

* 개거 : 배수관로 부설에 사용되는 U자 형상의 자재



재해 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간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 미 실시**
 - 굴착기 사용 시 운전 중인 장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으나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유도자 또한 배치하지 않음
- 작업계획서 미작성**
 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간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 준수**
 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
- 작업계획서 작성**
 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등 알려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